

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

- 환경부 제공 -

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약칭 : 자원재활용법 시행령)’을 일부 개정했다.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·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·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·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, 교체용 정수기 필터, 어망,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.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.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.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.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.

- 편집자 주 -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약칭 : 자원재활용법 시행령)

제27조(재활용비용) 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(이하 “재활용단위비용”이라 한다)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1. 5. 25.>

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28조(재활용부과금의 산정·부과 등)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1. 5. 25.>

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·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. 다만,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. <개정 2013. 11. 20., 2016. 1. 19.>

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0. 29., 2013. 11. 20.>

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. <개정 2012. 10. 29., 2013. 11. 20.>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28조의2(징수비용의 지급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. <개정 2009. 12. 24., 2013. 11. 20., 2014. 10. 22.>

1. 환경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(이하 “징수비율”이라 한다)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: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
 2.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: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
 3.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: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
- ② 환경부장관은 「환경개선특별회계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. <개정 2009. 12. 24.>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28조의3(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)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
 2.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(이하 이 조에서 “신용카드등”이라 한다)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, 업무수행능력,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-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,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2조제4항·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(이하 이 조에서 “부담금등”이라 한다)의 납부 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해당 부담금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21. 11. 23.]



포장과 법률

제29조(회수·재활용 실적 조사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, 공제조합, 회수·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, 회수·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·확인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1. 20., 2016. 1. 19.>

1.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·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2.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3. 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·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·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
4.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·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·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,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3. 11. 20.>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[제목개정 2013. 11. 20.]

제30조 삭제 <2007. 12. 28.>

제30조의2 삭제 <2007. 12. 28.>

제31조

[제17조로 이동 <2009. 4. 6.>]

제32조(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) 법 제23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.

1. 종이제조업
2. 유리용기제조업
3. 제철 및 제강업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33조(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) 법 제23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,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, 재활용시설 현황,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.

가. 종이제조업: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

나. 유리용기제조업: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

다. 제철 및 제강업: 조강(粗鋼) 또는 선철(銑鐵)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

2.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·수거량, 국내의 재활용기술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

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·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.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.

3.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, 그 실적을 기록·보존하도록 한다.
4.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.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34조 삭제 <2007. 12. 28.>

제35조(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) 법 제25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(이하 “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”라 한다)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,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, 재활용시설 현황, 기술 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.

가. 철강슬래그: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

나. 석탄재: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

2.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부산물을 분리·파쇄·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질과 상태, 배출 특성과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한다.
3.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.
4.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, 그 실적을 기록·보존하도록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35조의2(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·사용시설의 설치·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·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1. 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
2. 개선명령의 이행기간
3.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·확인 예정일
4. 그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



포장과 법률
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제35조의3(금지명령을 같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) ①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.

-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제35조의4(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)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명칭
2. 사무소의 소재지
3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4. 회원의 명단
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.

-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제35조의5(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)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
4. 사업의 내용

5. 회원의 자격과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
6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
7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8.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

②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·지출 결산서

2.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 예산서

③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제36조(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)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3. 11. 20.>

1.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

2.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

3.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·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·생산하는 사업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37조(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) 환경부장관은 회수·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1. 20.>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38조 삭제 <2005. 6. 13.>

제39조 삭제 <2005. 6. 13.>

제40조(재활용단지의 조성자) 법 제3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9. 12. 24.>

1. 한국환경공단

2. 삭제 <2009. 12. 24.>

3. 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(이하 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”라 한다)

4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41조(재활용단지의 조성)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



포장과 법률

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(이하 “재활용단지”라 한다)를 조성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7. 12. 26.>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42조(재활용단지의 관리·운영)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.

②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·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12. 24.>

1. 시·도지사
2. 한국환경공단
3. 삭제 <2009. 12. 24.>
4.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
5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·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③ 재활용단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·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43조(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)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44조(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·보관·선별·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)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9. 12. 31., 2018. 12. 31.>

1.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·포장재
2. 폐지(廢紙)
3. 고철
4.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하는 것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44조의2(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의 위탁)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.

[본조신설 2021. 6. 8.]

제45조 삭제 <2009. 4. 6.>

제46조(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“재활용의무생산자, 조합, 재활용제품의 생산자,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재활용의무생산자
2. 공제조합
3.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
4. 재활용제품의 생산자
5.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·운반하거나 중간 가공처리하는 자
6. 그 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·개발하는 자

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(이하 “자원재활용협회”라 한다)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명칭
2. 사무소의 소재지
3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4. 설립 연월일
5. 회원의 수

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,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,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
2.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46조의2(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2. 11.>



포장과 법률

1. 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
 2.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
 3.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
 4.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0. 12. 20.]

제46조의3 삭제 <2017. 12. 26.>

제47조(관계 기관의 협조)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7. 12. 26., 2020. 4. 14.>

1.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
2.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
3.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
4.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
5.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
6.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·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
7.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48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6. 1. 19., 2016. 12. 30., 2022. 5. 3.>

1.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
 2.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, 제2호의3, 제3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,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·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권한
-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 <신설 2014. 7. 21., 2022. 5. 3.>
1. 법 제25조의4제1항·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수입 신고·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 증의 발급
 2. 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
 3.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·징수
 4. 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
 5.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
가. 법 제41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(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로 한정한다)

나. 법 제41조제2항제15호

다. 법 제41조제2항제16호[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(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로 한정한다]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. <개정 2009. 12. 24., 2010. 12. 20., 2012. 10. 29., 2013. 1. 22., 2013. 11. 20., 2014. 2. 11., 2014. 7. 21., 2017. 12. 26., 2019. 7. 2., 2019. 12. 24., 2021. 5. 25., 2021. 6. 8.>

1.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

1의2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·징수

1의3.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

2.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

3.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

4.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

4의2.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·공개

4의3.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

4의4.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·운영

4의5.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·운영

5.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6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(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)

7.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·징수 및 반환

8.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·재료·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

9.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

10.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

10의2.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

11. 제14조에 따른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정산 및 반환

11의2.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·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

11의3.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

12.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·재료·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·확인 및 폐기물 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

13.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·포장재의 지정



포장과 법률

14.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·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
15.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
16.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·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
17.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
18.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, 부과 및 납부고지
19.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·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

20.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
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. <신설 2013. 11. 20., 2014. 7. 21.>

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한다. <신설 2016. 1. 19.>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[제목개정 2019. 12. 24.]

제48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환경부장관(제4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무
2.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
3.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
4.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
5.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
6.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·분할납부에 관한 사무
7.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·부과 등에 관한 사무

[본조신설 2015. 11. 26.]

제49조(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)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,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입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2. 24.>

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입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,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2. 24.>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제49조의2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

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9., 2022. 3. 8.>

1.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·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: 2014년 1월 1일

1의2. 제8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: 2022년 1월 1일

1의3.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: 2022년 1월 1일

2. 제11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: 2014년 1월 1일

2의2.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·재료·용기의 회수·재활용 비율: 2022년 1월 1일

2의3.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·포장재의 범위: 2022년 1월 1일

3. 제3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: 2015년 1월 1일

4.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: 2015년 1월 1일

5. 삭제 <2020. 3. 3.>

[전문개정 2013. 12. 30.]

제50조(과태료의 부과)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[본조신설 2009. 4. 6.]

부칙 <제32622호, 2022. 5. 3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관한 적용례) ①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.

② 별표 3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)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2022년도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